

페이지	개정안	수정안	사유
7 page	- ‘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’(국토부 고시)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%를 적용할 수 있음.(단,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 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~100%를 인정한다.) ~	(현행 적용) - ‘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’(국토부 고시)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%를 적용할 수 있음.(단, 토질·지질,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~100%를 인정한다.) ~	- 해당 용역의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본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타사업의 경력/실적을 가진 참여기술인의 난립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성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.
9 page	*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 단계 용역을 말하며,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,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]에 따라 평가 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,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	*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 단계 용역을 말하며,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(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 등)에 따라 평가 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,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	- 용역의 면적, 길이, 금액 등의 비율적용은 현행기준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]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으로, 평가기준을 과다하게 세분화할 경우 입찰서 작성 및 평가가 어렵고, 평가결과에 논란의 여지가 많음